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7 | 2024.03.19 (2024.03.11~03.17)**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1~03.17)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제19차 민생토론회(3/11)에서는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규제혁신·신산업육성으로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333 프로젝트' 조기 성공 지원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 ② 글로벌혁신 특구, 기업혁신파크, 수소클러스터 구축,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첨단산업 기지화 ③ 정선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조성 등 고품격 산악관광 육성 ④ 의료취약지역 제도 개선, 영동지역 물 부족 해소,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민생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함

제20차 민생토론회(3/14)에서는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 ② 우주산업, 농·축산업 첨단화, 'K-디즈니'로 전남의 산업 대대적 혁신 ③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에 1조 3천억 원 투입, 전남을 세계적 휴양지로 육성 ④ 전남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로 산업과 교육 중심으로 육성 등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3/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상생의 디지털 분야,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5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한 바,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심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①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② 혁신도전형 R&D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 목표 설정 ③ 혁신도전형 R&D사업 맞춤형 전주기(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시스템 완착 등과 같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키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 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 담당기관을 지정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관계부처 합동) 6
- 제2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관계부처 합동) · 7
- 비상경제장관회의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9
- 비상경제장관회의 -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10
- 비상경제장관회의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관계부처 합동) · 11
- 비상경제장관회의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관계부처 합동) 15
- 비상경제장관회의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관계부처 합동) 18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국토교통부) 2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8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외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31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32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3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4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35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9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4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4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1~03.17)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 [기업인수/합병] 비계열사간 합병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에너지·자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 [통상관세] 미국 덤핑조사 :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인한 생산비용 왜곡(PMS) 주장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환경부, 산림청)

제1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2024-03-11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규제혁신·新산업육성으로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육성, 바이오·수소 등 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글로벌 혁신특구·수소 클러스터 조성,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추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지원키로 함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333 프로젝트' 조기 성공 지원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육성

-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 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
-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어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

② 글로벌혁신특구, 기업혁신파크, 수소클러스터 구축,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첨단산업 기지화

-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구축
-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

<'23년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지역>

지역	특구명	개요
① 부산	·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를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② 강원	· AI헬스케어	·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AI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③ 충북	· 첨단재생바이오	·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④ 전남	· 에너지 신산업	·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③ 정선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조성 등 고품격 산악관광 육성

-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 건설
-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

④ 의료취약지역 제도 개선, 영동지역 물 부족 해소,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 등 민생 애로 해소

-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

관계부처 합동
(지방시대위원회)

제2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2024-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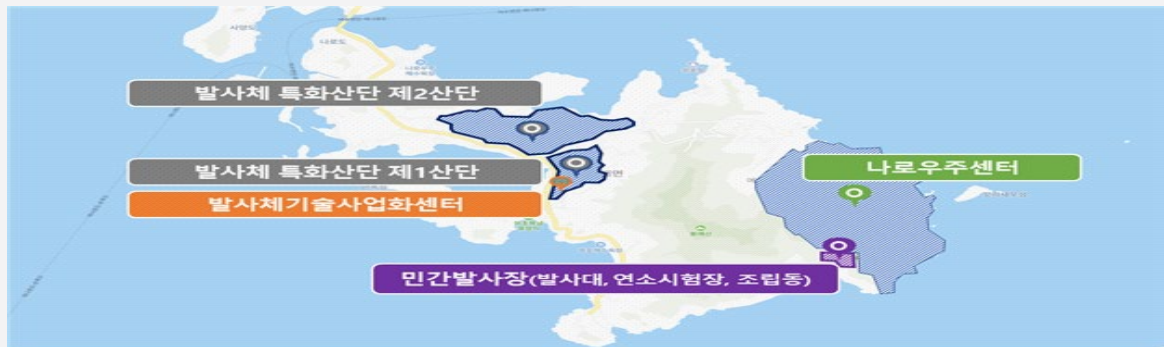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

-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 기를 마련
-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현황도>



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민간 발사 기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 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제1공구 : 액체 발사체 기업 집적 - 제2공구 : 고체 발사체 기업 집적	 - 발사대 및 레인지시스템 등 구축 - 수직/수평 엔진 연소시험 시설 구축 - 발사체-위성 조립동 등 구축	 - 산단 입주 기업 지원 - 공동 활용 연구 장비 및 시설 지원 - 발사체 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역 대학 연계)

* 추진과정에서 세부내용 변동가능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 진행
-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지원

② 우주산업, 농·축산업 첨단화, ‘K-디즈니’로 전남의 산업 대대적 혁신

-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 지원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사업’의 핵심 인프라 조성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개요>



③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에 1조 3천억 원 투입, 전남을 세계적 휴양지로 육성

-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 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 약속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구축)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 기반 일상여행 환경조성
-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형성)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
-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조성) 만(灣)과 섬의 여행 여건 개선, 해양 레저 기반 구축

④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로 산업과 교육 중심의 전남

-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
-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예정 후보지 (자료 출처 : 전라남도)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03-13

최근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1.6%)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음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① ‘함께 줄이는 부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방안 중심으로 논의 진행

- (현장의견) 고금리·고물가로 비용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
 - (정부답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영업정지’ 처분은 신속하게 개선
- *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대환대출,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② 함께 만드는 환경’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 중심으로 논의

- (현장의견) 구인난이 심각하며 외국인력 활용도 쉽지 않고, 대기업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불공정 피해’가 있다고 호소
- (정부답변) 외국인력 쿼터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③ ‘함께 키우는 미래’에서는 스타트업·벤처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 (현장의견) 스타트업 해외진출시 해외법률 적응* 및 투자유치 어려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열악함 호소
 - (정부답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가 쉽도록 모태펀드를 1분기 중 출자하며, 지역 창업 인프라를 확충
- * 스타트업 대표 :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단계에 맞는 밀착형 법률지원 필요”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① 비용부담 완화

- 법령 개정,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중

②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호응
-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 이행중

③ 스타트업 법률지원

-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중

④ 기타 과제

- 그 외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 벤처·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제도개선, 사업공고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 이행 중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03-13

국민이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및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대해 논의함

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연계)**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하여, 올해까지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추가 제로화 (총 421개, ~'24.12월)

*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

- **(이행력 확보)** 실제 현장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기관 담당자 교육('24.3월) 및 현장점검 실시('24.6월)
- **(사무정비)** 정비대상인 총 2,145건(관행 295건+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중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약 42%) 정비

※ 중앙·지방 협력체계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 **(서비스 개시)**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②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 **(국내대리인, 동의의결)** 국내대리인제도,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24.3월)
-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 추진(~'24.12월)

③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 **(비대면진료 활성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화 추진
-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2024-03-13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친화 서비스 업종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30자문단 등 청년 세대과 함께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웨딩·뷰티 서비스 관련 발전방안을 논의함

< 기본 방향 >

- ◇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웨딩·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①취·창업 활성화, ②소비자 만족 제고, ③성장 기반 마련 등에 초점
-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이 발전방안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 총 20개의 청년 제안 과제 반영

정책 방향	취·창업 활성화	소비자 만족 제고	성장 기반 마련
웹 콘텐츠 창작	계약 공정성 확립	시장 왜곡행위 제재	동반산업 성장
	·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 · 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 가짜뉴스 유통 근절	· 번역 질 제고 지원 · XR등 연관기술 개발 지원 · 번역 질 제고 지원
	창작자 보호·지원	가격 규제 개선	수출 활성화
	· 정신건강 관리 지원 · 창작자 경력개발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 수출 유망시장 조사
웨딩 뷰티	교육훈련 강화	공정거래 확립	법·제도 정비
	· 뷰티 창업교육 확대 · 뷰티 창업정보 제공 강화 · 웨딩분야 자격체계 마련	· 결혼 가격정보 공개 강화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 결혼 진흥·발전 법률 제정 · 결혼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뷰티 통계 세분화
	창업부담 완화	공공예식 활성화	방한 관광 확대
	· 공유미용실 제도화 · 피부·네일 간이과세 적용 · 웨딩 1인 창조기업 지원	· 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 · 공공예식장 모델 다양화	· K-뷰티 체험·홍보관 확충 ·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

< 주요 과제 추진일정 >

분야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웹 콘텐츠 창작	·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	문체부	'24.4월
	· 웹툰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문체부	'24.3Q
	· 웹툰·웹소설 작가 컨설팅 지원 확대	문체부	연중
	· 국민내일배움카드 창작 실무자 훈련과정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	'24.2Q
	· 웹소설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문체부	'24.6월
	·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과기부	'24.3Q
	· 콘텐츠 전문가 DB 구축, 전문가-창작자 매칭	문체부	'25.1Q
	· 신진 웹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창작소재 발굴 지원(전문가 특강 등)	문체부	'25.1Q
	· 웹 콘텐츠 창작자의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고용부	'24.4Q
	· 웹 콘텐츠 창작자의 정신건강 진단·관리 지원	문체부	'24.3월
	·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	문체부	연중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 개선	고용부 문체부	'24.4Q
	· 문화예술융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	고용부 문체부	'24.4Q
	· 예술활동증명 사례집 발간	문체부	'24.3Q
	· 크리에이터 경력관리 플랫폼(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과기부	'24.2Q
	· 청년 크리에이터 멘토링 지원	과기부	'24.4Q
	·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24.4Q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정부입법 발의)	문체부	'24.6월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확대 개편	문체부	'25~
	· 전문 교육기관 연계 웹소설 번역 교육·실습과정 신설	문체부	'24.2Q
	· 버추얼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R&D 지원	과기부	연중
	· 웹툰 분야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문체부	'25~
	· 웹툰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유망시장 조사	문체부	'24.3Q
	· 웹소설 창작자의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여 지원	문체부	'25~

분야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웨딩 · 뷰티	· 소상공인 온라인 창업교육 내 뷰티 교육과정 신설	중기부	'24.3Q
	· 소상공인 업종별 실습교육 비용 확대 지원	중기부	'24.2Q
	·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부	'24~
	· 피부·기타미용업 창업기상도 서비스 신규 제공	중기부	'24.3Q
	· 결혼 서비스 분야 자격관리체계 마련	여가부	'25.2Q
	· 뷰티 분야 전문대학·기업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장비지원	교육부	연중
	· 디지털 네일아트 NCS 마련	고용부	'24.3Q
	· 뷰티 업종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 지원	중기부	'24.2Q
	· 뷰티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소상공인 입점 등 지원	중기부	'24.1Q
	· 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국세청	'24.3Q
	· 공유미용실 제도화	복지부	'24.4Q
	· 1인 창조기업 대상에 개인서비스업 신규 추가	중기부	'24.3Q
	· '참가격' 플랫폼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게시	공정위 등	'25~
	· 결혼 서비스 체감가격, 선택 다양성 등 정기 조사·공개	공정위	'25~
	·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방안 마련	기재부	'24.4Q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4.3Q
	·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24.2Q
	· 예식공간 신규개방시설(미술관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문체부 등	'24.2Q
	·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예식장 관련 평가지표 신설 추진	여가부 행안부	'24.3Q
	·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	행안부	'24.4Q
	· 청년세대 선호에 맞는 공공예식장 모델 개발·보급	여가부	'24.4Q
	·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마련	여가부 기재부	'24.4Q '24.4Q
	· 결혼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정기 실시 · 결혼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정기 실시	여가부	'26~ '26~
	· 예식장업 대상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26~
	· 표준직업분류·고용직업분류에 네일관리사 세분류 신설	통계청 고용부	'24.3Q
	·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 1개소 추가 운영	복지부	'24~
	·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	문체부	'24.6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동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신산업·첨단산업 경쟁력 제고가 핵심임. 하지만, 협소한 영업범위, 과도한 사업요건, 신기술 관련 기준 미비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및 사업 확장에 애로가 있고 사업 초기단계 부족한 민간 수요 보완, 데이터 표준화, 인증부담 경감 등 신산업 확산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요구도 지속됨

정부는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경제단체·협회 건의,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핀테크, 로봇 등 분야에서 33건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분야별 규제혁신 및 애로해소 방안

① 핀테크(5건)

-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신시장 개척

*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개선) 기존 3개 업무 +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추가

-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200만원 내)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다양한 외환서비스* 지원

* (예) ①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 ②어머니가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시 활용 등

-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함으로써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편의 제고

② 로봇·디지털 전환(8건)

-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마련

* (예) 방역 로봇을 활용하여 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 증명서 발급

-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관련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수직농장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수직농장의 육성 지원

③ 인공지능(AI)·통신(5건)

-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인증* 획득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여 중복적 인증 부담 완화

* Good Software 인증: SW 품질인증 제도, 국제표준 9개 주특성(효율성, 보안성 등) 검증

-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 마련*

* 현재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이 부재하여 제3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움

④ 헬스케어(4건)

- 행정절차 간소화*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디지털의료제품 특화 관리체계 구축

* 혁신 의료기술 선정 후 후속조치 단축(40일→20일) 등

-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바이오테크 시장 활성화

* (예)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 변이(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사 등 문제) 확인 → 지방분해·식욕조절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추천, 정기적인 운동·검진 제언

⑤ 첨단전략산업·우주(4건)

-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을 위해 긴급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울산) 수요에 충분한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
- 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 민간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담은 우주산업화 전략 수립

⑥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7건)

- 운전교육 중 운전면허 보유자(장롱면허) 대상 도로연수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창출

*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시 요구되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 면제

-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반려동물 운송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현재 관련 규정 부재)하여 반려산업 분야 신산업 시장 확대

- 산업현장 등에서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하여 친환경적인 전동 지게차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부담 완화

* 농작물 운반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함에도 일반 지게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로 분류 → 취 · 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 의무 부과

** 견인능력, 운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

<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핀테크 (5건)		
1-1. 외환서비스 업종 확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재부	'24년
1-2.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정	기재부	'24.上
1-3.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재부	'24.上
1-4. 비금융회사 외환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재부	'24.上
1-5.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24.4분기

2. 로봇·디지털 전환 (8건)

2-1. 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방역소독지침」 개정 추진	질병청	'24.4분기
2-2.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제정	경찰청	'24년
2-3.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기업 대상 해외인증 취득 수과정 지원 확대	산업부	'24년
2-4.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확산 * 서빙로봇 및 연관 SW 패키지 보급 지원	중기부	'24년
2-5. 스마트팩토리 초기 구축시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 제공 * 제조혁신(DX) 포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준비	중기부	'24.上
2-6.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형 제조데이터 활용 표준모델 50개 마련	중기부	'24.下
2-7. 항만 자동화시 국내기술 활용 확대 * 신규 개발 주요 항만(광양항 등)에 국산 항만장비 도입·활용 확대	해수부	'24~'25년
2-8.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 ① 「농지법령」 개정 추진 ②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검토 ③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 신설	①농식품부 ②기재부	'24년

3. 인공지능(AI)·통신 (5건)

3-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 부담완화 * 「SW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24.6월
3-2. AI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AI 체험환경 조성 * 지자체 주도 AI·데이터 활용 서비스 과제 발굴	과기정통부	'24.上
3-3. 파견관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제로 전환 * 원격 보안관제의 기술적 검증 정책 연구용역	과기정통부	'24.下
3-4.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개보위	既조치
3-5.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폐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과기정통부	既조치

4. 헬스케어 (4건)

4-1.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 * 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②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①복지부 ②식약처	①'24.上 ②'24.下
4-2. 임직원 건강관리시장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 * ① 디지털헬스케어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인증혜택 확대 ② 공공 맞춤형 복지제도에 디지털헬스케어 시범도입	①복지부 ②인사처	①'24년~ ②'24.下
4-3.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 *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	복지부	'24.6월
4-4.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 명확화 * 협회·건의기업 간담회·질의회신 등을 통해 의견서 마련	복지부	'24.1분기

5. 첨단전략산업·우주 (4건)

5-1.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 반도체 수리부품 안전인증 면제승인 긴급처리절차 도입	국표원	'24.4월
5-2.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확충 * 온산 정수장 용수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	환경부	'24년
5-3.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24~'28)」 수립	과기정통부	'24.上
5-4.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 *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및 추진	국토부	'24년

6.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서비스 분야 (7건)

6-1. '장릉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 연구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검토	경찰청	'24년
6-2.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 렌터카 활용 동물운송업 등록기준 마련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25년
6-3.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통위	'24.10월
6-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아용 바운서 안전기준 개정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국표원	'24년
6-5. 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중기부	'24.3분기
6-6. 전동 지게차의 제조현장 내 진입여건 명확화 * 협회·건의기업 질의회신 등을 통해 답변	산업부	'24.上
6-7.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 마련	국토부 농식품부	'24.上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2024-03-13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관심지며 소비자 불만·분쟁건수 급증, 국내사업자 역차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업자의 국내법 의무 준수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쏘부처 차원의 정책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임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관심지며 소비자 불만·분쟁건수 급증, 국내사업자 역차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업자의 국내법 의무 준수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쏠부처 차원의 정책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임

① (3大 추진전략)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국내법을 엄정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

-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

② (4大 주요항목) 주요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한 부처 공동대응

3大 추진 전략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 전자상거래법 집행 등 국내법 적용 * 전자상거래법 등 법위반 조사·제재 및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주요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 4大 주요항목의 범부처 공동 대응 위해 식·의약품 + 가품 + 청소년 유해매체물 + 개인정보 침해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 협의체 ▶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활동 강화 *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즉각 대응 ▶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관계 부처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적극 구제	▶ 핫라인 구축 등 피해구제 활성화 ▶ 소비자 24 등을 통한 통합 정보제공 *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환불양식, 관련통계 등 통합 제공 ▶ 피해주의보 발령 등 위기시 신속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선제적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 병행	공정위 소비지원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 종합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한 TF 운영 *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한 이행 점검 ▶ 실무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관계 부처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추진과제명		주요내용		담당	일정
① 전자상거래법 집행 등 국내법 적용					
① 법위반 조사 및 엄중 제재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	공정위	3월~		
	■ 공정거래법 관련 법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직권조사 실시		상시		
	② 해외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전상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3월 입법예고	
② 주요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					
① 위해 식·의약품 관리 강화	■ 혈당계·혈압계·양압기, 해열진통제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 실시	식약처	4월		
	■ 해외직구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 및 신속차단 확대 추진		'24년		
	■ 해외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6월		
② 가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 특허청(모니터링) 관세청(국경단속강화)을 연계한 통관조치 강화	특허청 관세청	5월		
	■ 상표법을 개정하여 해외직구의 단속 근거 명확화		하반기		
	■ 가품관련 자진시정 시스템 도입 추진		상반기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 해외쇼핑몰 6개사 집중점검	여가부	3월		
	■ 모니터링 및 청소년 접속 차단조치 등 신속대응 강화	여가부 방심위	4월~		
④ 개인정보 침해 방지	■ 해외 직구사업자 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	개인정보위	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		'24년		
	■ 이용자대상 개인정보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상시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고지 및 동의여부 점검	방통위	'24년		
③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활동 강화	■ 위해물품 유통방지 대책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관계부처	상시		
④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위해물품 정보 공유 및 부처간 협업 검사 확대 추진	관세청	하반기		
	■ 스마트 통관체계 구축		'24년		

전략 2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추진과제명	주요내용	담당	일정
① 핫라인 구축 등 피해 구제 활성화	■ 해외플랫폼과 상시소통 가능한 핫라인 구축	공정위 소비자원	상반기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소비자불만 상담접수 및 분쟁조정 전담창구 운영	소비자원	상시
② 소비자24 등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직구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정보 제공	공정위 소비자원	상반기
	■ 소비자가 직접 이의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톨킷 제공		
	■ 소비자상담 데이터 등 관련 통계 제공		
③ 피해주의보 발령 등 위기시 신속 대응	■ 모니터링을 통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신속히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상시
④ 국내외 플랫폼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국내외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상반기
⑤ 선제적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 해외플랫폼과 소비자원간 자율협약 추진	공정위 소비자원	상반기
⑥ 소비자 단체를 통한 모니터링 병행	■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공정위	상시

전략 3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추진과제명	주요내용	담당	일정
① 종합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한 TF 운영	■ 종합대응 범정부 TF 운영	관계부처	3월~
② 실무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 해외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공정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함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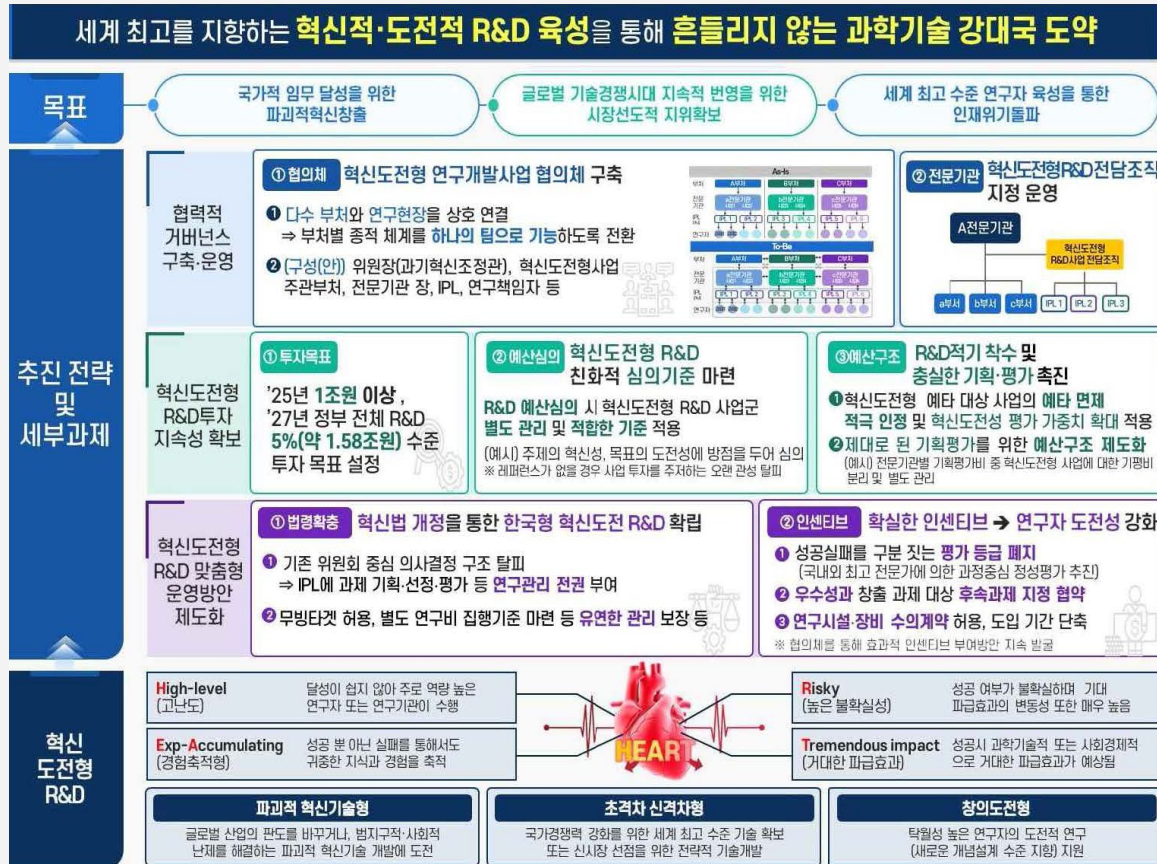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임.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거버넌스, ▶투자, ▶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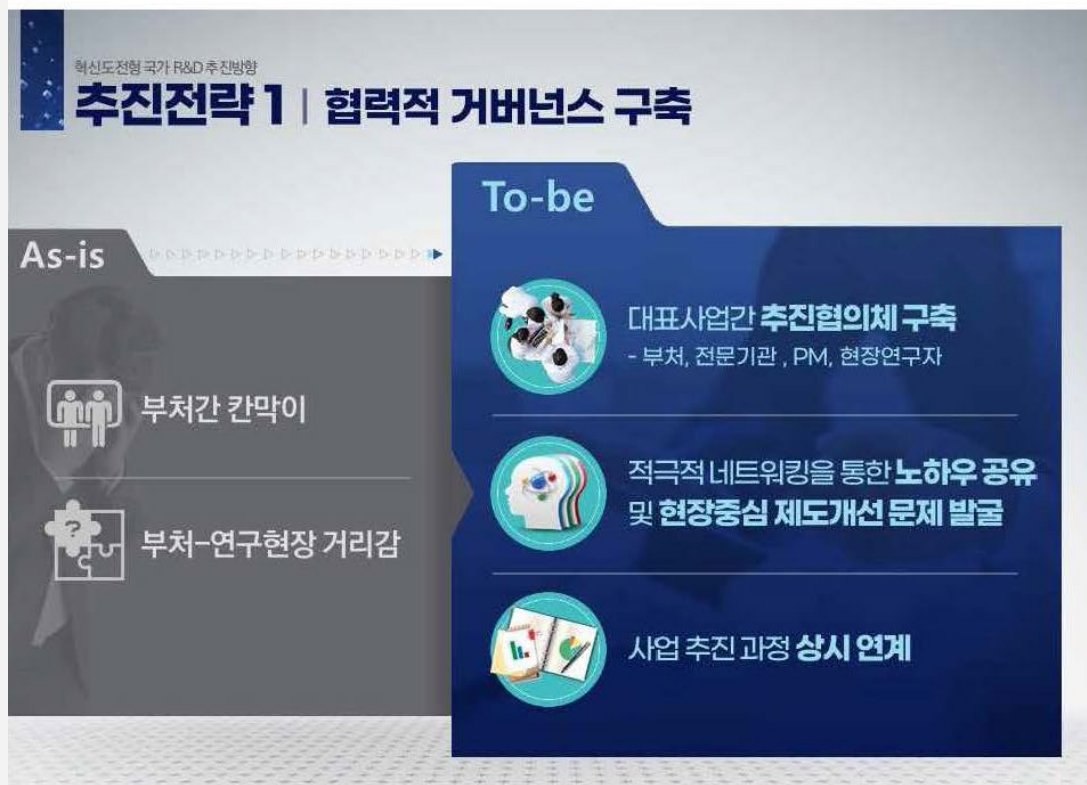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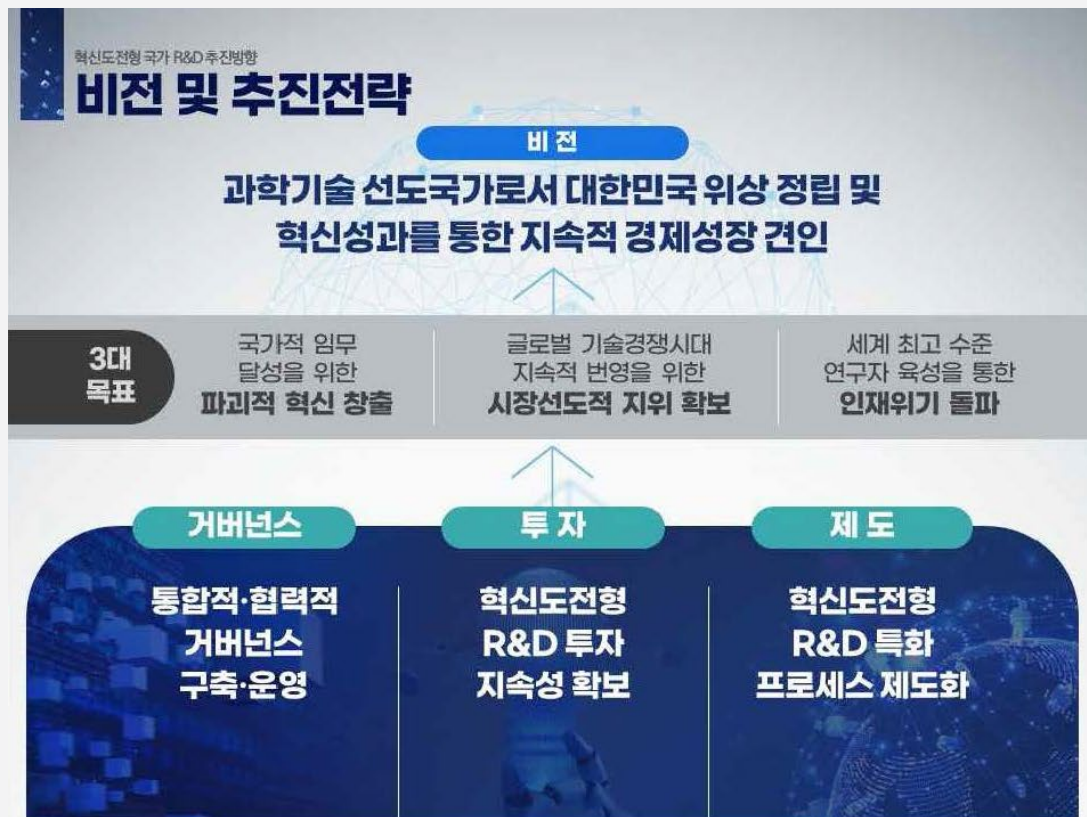
*법적 기반 마련 (과기기본법령 개정, '21년) 및 부처별 혁신·도전지향 R&D사업 추진 확산('19 알카미스트프로젝트, '20 혁신도전프로젝트, '24 한계도전프로젝트·한국형ARPA-H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 ② 혁신도전형 R&D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 목표 설정
- ③ 혁신도전형 R&D사업 맞춤형 전주기(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시스템 완착

※ 무빙타겟 등 유연한 연구관리, 평가 차별화와 후속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





혁신도전형 국가 R&D 추진방향

추진전략 2 |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As-is



혁신도전형 R&D
추진의 안정성 부족



PM주도 설계 및
적기 착수가 가능한
프로그램형 사업 부족

To-be



예산 확대 및 투자안정성 확보

- 중장기적 혁신도전형 R&D 투자목표* 설정 및 예산 우선배분

*'25년 1조원 이상, '27년 총 정부R&D 5%수준(약 1.58조원)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관리체계 확립

- Novelty 중심 예산심의기준 적용, 제대로 된 기획평가 제도화

혁신도전형 국가 R&D 추진방향

추진전략 3 |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프로세스 제도화

As-is



SYSTEM 충돌
(기존 법체계와 DARPA식
운영방안 mismatch)



도전적 목표수립에
대한 부담 여전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To-b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DARPA 실현

- PM 권한 명시, 무방타겟 등 적극적 연구관리 및 유연한 연구비 집행 근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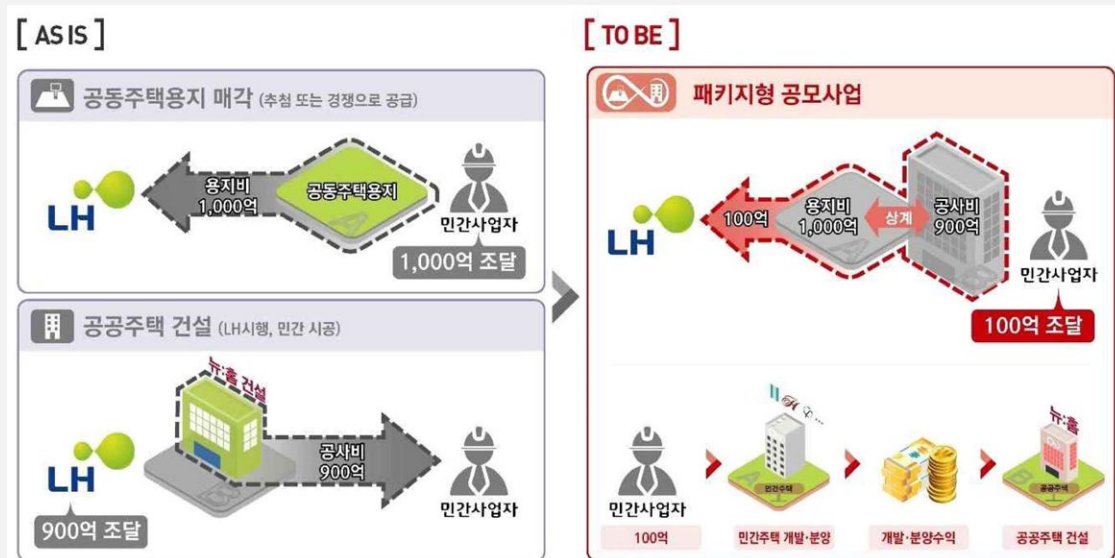
평가 차별화, 후속 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 기계적 평가등급부여 탈피, 도전 과정 및 경험 중시 평가 실시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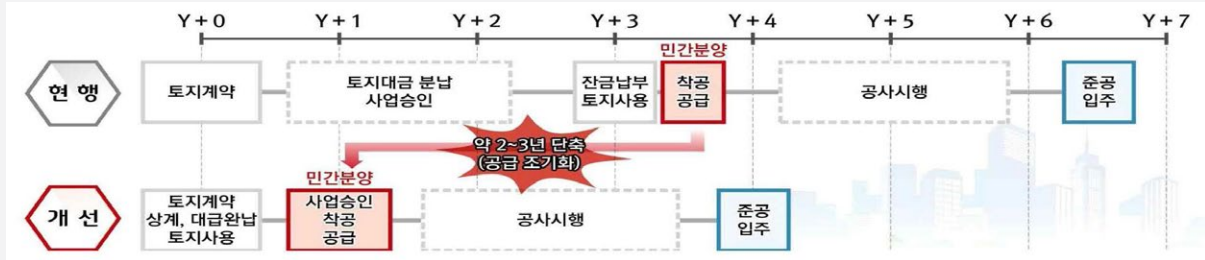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임.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공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며,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눈에 보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공공·민간 협력으로 주택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Ⅰ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배경

금리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러·우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급증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 위축



Ⅱ '패키지형 공모사업' 사업모델



Ⅲ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기대효과1 :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로 사업참여 활성화
 →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



기대효과2 토지비 납부기간 축소
 → 기존보다 2~3년의 주택착공시기 단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

심판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9714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41조제1호, 제65조의6 신설, 별지 제24호서식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2 시행
-------	-----------------------------------	---------------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산업안전교육 인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6조제2항제3호다목, 별표3, 별표4)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13 시행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콘크리트용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에 점토덩어리가 함유되어 있는 정도에 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콘크리트용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의 양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의4제1항, 제16조제3항제4호 등)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14 시행

도시민의 여가활동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종전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주제공원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등 특정공원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데, 운동시설의 수요 증대에 따른 시설설치 확대를 위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운동시설의 경우에만 특정공원시설에 포함되도록 조정하고, 공원시설 중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5 시행

(다만, 제30조의2제1항 및 제32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제13조의2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정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②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제외 대상 (제21조제4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신설)

-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4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의 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2024.03.15. ~03.25.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3.5일)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6조, 제7-37조)
 -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 ②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5-4조, 제5-10조, 제7-13조, 제7-33조, 제9-6조, 제9-24조)
 - 국내 보험사업자가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 보험사와 재보험계약 체결 및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상계 신고 및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대차계약을 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 ③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안 제1-2조, 제2-14조, 제3-1조, 제5-10조, 제7-2조, 제7-8조, 제7-14조, 제7-32조, 제7-45조, 제9-5조, 제10-17조, 제10-23조, 별지 제9-1호 서식)
 - 타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정 의조항의 규정 명확화
 -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 불비 해결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 정으로 조 문화
- 그 외 기타 오타 수정 등 법령 정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1, 팩스: 044-215-4819\)](tel:044-215-475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1.
~04.04.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현행 조문에 맞춰 조문 정비 (안 제8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
- ② “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 ③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13, 팩스: 044-203-4743\)](tel:044-203-4513)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3.14.
~04.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2조 및 제3조)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 전략회의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③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범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④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⑦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 ⑧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화: 044-203-4321, 팩스: 044-203-4731)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2024.03.14.
~04.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를 규정 (안 제2조)
-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 산업표준을 제정·보급 시 인증비용 등 지원의 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③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안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 및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 ④ 계약학과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 (안 제5조)
 -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
- ⑤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의 신청 방식 구체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화: 044-203-4321, 팩스: 044-203-4731\)](tel:044-203-4321)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3.13.
~04.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범위를 설정 (안 제12조제1항 신설)

- ② 환경부장관의 요청 시기를 현행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 (안 제 12조제3항)

※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44-201-6918, 팩스: 044-201-6918\)](tel:044-201-691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5.
~04.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②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 (안 제11조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③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 ④ 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전화: 044-202-7579, 팩스: 044-202-8071\)](tel:044-202-7579)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3.
~04.22.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 담당기관을 지정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안전도인증 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규정 (안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별표2)
 - 안전도인증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규정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12조의7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같은 조제2항 내지 제3항)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대상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 가입시기, 보험계약 체결 거부 예외 사유 등을 규정
- ③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12조의17)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및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을 규정
- ④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관리 근거 신설에 따른 차량 방치기간 규정 (안 제3조 신설)
 -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동명령, 직접 이동이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차량 방치 기간을 1개월로 규정
- ⑤ 수시검사 신청기한 규정 (안 제12조의3제7항)
 -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신설에 따라 수시검사 신청기한을 30일로 규정
- 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 관련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안 별표6)
 - 보험가입, 안전·보수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실시 등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 ⑦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용규정 정비 (안 제12조의12제1항·제3항·제7항, 제12조의14제3호 제12조의18제1항·제12조의19·제12조의20제1항)
 - 법령 개정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11,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3.
~04.22.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주차구획 등 설치기준 상향 (안 제16조의2, 제16조의5)
 -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규정
- ②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구체화,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 등 규정 (안 제16조의8, 제16조의9, 별지 제8호의8·제8호의9·제8호의10 서식 개정)
 - 수시검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30일) 등을 규정
- ③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규정 (안 제16조의15, 별지 제15호의4 서식)
 -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규정
- ④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조의12, 별지 제15호의5·제15호의6·제15호의7 서식, 별표 1)
 -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 ⑤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3년), 교육내용, 교육시간(4시간) 등을 규정
- 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등 안전도인증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10,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5, 제8호의6 서식)
 - 안전도인증 업무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인증기관 지정 신청 근거 등을 규정
- ⑦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강화에 따른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대상 등을 규정 (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별지 제17호 서식)
 -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변경 신고 대상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 ⑧ 지자체장의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 발급, 표지 부착 방법 등을 규정 (안 제16조의24, 별지 제15호의8서식)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중지 표지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그 사항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 ⑨ 법령 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규정 정비 (안 1조의2, 제16조의16·17, 제16조의20·21, 제16조의25 내지 27)
 -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인용 규정 정비

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외 대상 규정 (안 제16조의22)

- 각종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등을 기계식주차장 정밀 안전 검사 수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11, 팩스: 044-201-5581\)](tel:044-201-38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03.14.
~03.22.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 (안 제27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

②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제27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tel:044-201-3369)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03.14.
~04.23.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택법('24.1.16. 공포, '24.7.17. 시행)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목구조 공동주택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 (안 제14조의2제1항다목 신설)**
 -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층간바닥 대상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자 함
- ②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슬래브 두께 기준 설정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주택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함
- ③ **사전인정 바닥구조 및 층간소음 성능검사기준 관련 자구수정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0조의9제1항)**
 - 현재 하나의 조항에서 동시에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사전인정 바닥구조 사용의무와 성능검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고자 함
- ④ **사업주체의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통보 (안 제60조의9제6항 신설)**
 - 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및 필요시 보완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리도록 함
- ⑤ **층간소음 우수시공사 공개 기준 및 방법 (안 제60조의9제7항 신설)**
 - 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전년도 준공실적 및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http://www.mot.go.kr) (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4.
~04.2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 등 대국민 광역교통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8조의3, 제9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자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②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 (안 별표 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③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 (안 제16조의2)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④ 소규모 환승시설의 정의 (안 제4조의2 및 제12조)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규정 및 국고 지원 비율 규정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tel:044-201-5050) (전화: 044-201-5050, 팩스: 044-868-8375)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03-14 발의
---------------	------------------------------	---------------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024-03-11 발의
---------	--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창원·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18(월) 10:00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3/20(수)	「금주의 서평」 제670호(2024-11호) 발간 - 도서명 : Z세대 트렌드 2024 - 저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국회도서관	
	3/20(수)	「World&Law」 제2024-6호 발간 - 교묘한 암표 판매, 뿌리부터 뽑으려면?		
	3/20(수)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13(수)	「이달의 입법민원」(2024. 2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3/13(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2호)」 발간		
	3/11(월)	「THE 현안」 2024-3호 발간 -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국회도서관	
	3/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0호(2024-2호) 발간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3/13(수)	「금주의 서평」 제669호(2024-10호) 발간 - 도서명 :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 저자 : 가와우치 아리오		
	3/13(수)	「Data & Law」 2024-1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3/14(목)	「현안, 외국에선?」 제78호(2024-6호) 발간 -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3/11(월)	「이슈와논점」 제2211호 발간 -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국회입법조사처	
	3/11(월)	「NARS 현안분석 제316호 발간 -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3/14(목)	「이슈와논점」 제2212호 발간 -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팬덤 정치와 미국 대선		
	3/15(금)	「이슈와논점」 제2213호 발간 - 프랑스 행정입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1~03.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11(월)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1) - IP 공통 및 특허
3/12(화)	기업인수/합병	비계열사간 합병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규정
3/12(화)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3(수)	에너지 · 자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3/14(목)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3/15(금)	통상관세	미국 덤핑조사 :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인한 생산비용 왜곡(PMS) 주장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